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유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리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 .co.kr)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6년 9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6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 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02-2168-7900, http://www.yurie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 2026.09.30)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96603)

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유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의 시세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위험과 일반적인 주식투자가 수반하는 위험 이외에도 중소형주 투자위험을 추가로 수반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지수 × 95%) + (CD91일물 × 5%)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되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투자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 이내	1.441	0.850	1.320	1.440	245	399	560	907	1,9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1.991	1.400	1.590	1.990	204	397	571	921	1,962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944	0.353	0.980	0.943	146	247	353	581	1,25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1.135	0.544	1.030	1.134	116	238	366	642	1,462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Class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1년 단위로 Class C2, Class C3, Class C4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 하였습니다. 상기 총보수·비용 예시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주2) **Class A와 Class C1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Class A-e와 Class 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0/29~ 26/10/28	24/10/29~ 25/10/28	23/10/29~ 24/10/28	22/10/29~ 23/10/2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1-03-08	47.11	46.47	35.42	13.23	5.11
비교지수	2011-03-08	48.20	49.40	36.10	14.45	7.30
수익률 변동성	2010-10-29	44.97	34.62	29.42	24.65	19.82

주1) 비교지수 : [(KOSPI 지수 × 95%) + (CD 91일 수익률 × 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투자신탁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투자신탁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운용 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추연식	1980	책임	16	1,592	86.05	55.22	99.06	63.38	18년5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유리자산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금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항상 급격히 변화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의 시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파생상품, 주식관련채권(전환사채 등) 등과 같이 그 가격이 주가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주식의 시세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형주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에 비해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주식투자가 수반하는 위험 외에 중소형주 투자위험을 추가로 수반합니다.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 변동성 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의 위험 수준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입 방법

-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 방법

-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table>
<tr><td>기준가</td><td>
<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r><td>퇴직연금제도의 세제</td><td>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①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전환 관련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유리자산운용㈜ [대표번호: 02-2168-79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yurieasset.co.kr]</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 · 매출 총액 | 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년 11월 6일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후취</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C1)</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td></tr>
</table>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 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관(F)	법인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용 수익증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9660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96604
수수료선취-온라인(A-e)	AQ4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966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966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966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966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66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CG0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1e)	CG0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A400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Q48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9660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96604
수수료선취-온라인(A-e)	AQ4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966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966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966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966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66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CG0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1e)	CG0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A400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Q48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등록사항
2010.10.29	- 최초설정
2011.01.31	- 신탁계약 변경 : 모자형으로 변경 (유리슈퍼뷰티증권투자신탁[주식]→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1.05.04	- 신탁계약 변경 : Class W 추가
2011.05.27	- 신탁계약 변경 : Class F 추가 등
2011.11.10	- 결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 기타 위험등급 분류기준 업데이트 및 투자신탁 관련 비용 내용 추가 등
2012.09.13	- 책임운용인력 변경 (김현욱→이준혁)
2013.01.18	-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등
2013.07.16	- 부책임운용인력 변경 - 의결권행사공시방법 등 수시공시 내용 보완 -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운용현황 등의 내용 갱신 등
2014.03.20	- S, A-e 클래스 신설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2014.04.04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이준혁→장승학, 부책임: 조용화→전태성, 2014.04.04변경)

2014.08.14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장승학→성태형, 2014.08.14변경)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사항 반영
2014.12.01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및 기타 자구 정정 등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2015.01.30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성태형→강슬기, 부책임: 전태성→김승태, 2015.01.30변경) - 법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의 해지) - 세제 개편사항 반영(법인에 대한 과세율 변경)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과 관련 유의사항)
2016.02.16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추가 - C-W클래스 가입자격 추가 - 비교지수 비중 변경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채권평가회사 추가 -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변경
2016.02.26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삭제(유리슈퍼뷰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6.05.27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강슬기→이해진, 2016.05.27 변경)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14	-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 김승태→추연식, 2016.07.14 변경)
2016.07.30	-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15시→15시30분)
2016.12.20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이해진→이기명, 부책임: 추연식→손지웅)
2017.01.19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평가이익 유보)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 - 투자대상 추가(환매조건부 매수)
2017.05.30	-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 손지웅→최영재)
2017.08.29	-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 최영재→강동호)
2017.11.21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2018.04.16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강동호 → 김기둥)
2018.07.23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기명 → 김상우)
2018.10.11	- C-P1, C-P1e 클래스 신설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기둥 → 소정섭) - 법 개정사항 반영
2018.12.24	- 환매수수료 삭제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2019.05.30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소정섭 → 박정엽)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2020.05.12	- 모투자신탁 추가(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0.11.13	- 모투자신탁 삭제, 투자신탁보수 인하, 클래스 삭제(W),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 → 2등급)

2023.06.09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23.08.11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상우→김정은)
2024.02.14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정은→추연식),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김정은)
2024.04.16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24.11.19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2026.11.06	-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 → 1등급)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용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유리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대표전화 : 02-2168-79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2026.09.3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추연식	1980	책임	16	1,592	86.05	55.22	99.06	63.38	18년5개월

<이 력>
- '08.02~'15.11 한국투자신탁운용
- '15.12~'16.12 유리자산운용
- '16.12~'19.03 현대인베스트먼트
- '19.03~'23.09 공무원연금공단
- '23.09~현 재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유리자산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김현욱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 2012.09.17
	이준혁	2012.09.18 ~ 2014.04.03
	장승학	2014.04.04 ~ 2014.08.13
	성태형	2014.08.14 ~ 2015.01.29
	강슬기	2015.01.30 ~ 2016.05.26
	이해진	2016.05.27 ~ 2016.12.19
	이기명	2016.12.20 ~ 2018.07.22
	김상우	2018.07.23 ~ 2023.08.10
	김정은	2023.08.11 ~ 2024.02.13
	추연식	2024.02.14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박정원	2011.01.31 ~ 2013.07.15
	조용화	2013. 7. 16 ~ 2014.04.03
	전태성	2014.04.04 ~ 2015.01.29
	김승태	2015.01.30 ~ 2016.07.13
	추연식	2016.07.14 ~ 2016.12.19
	손지웅	2016.12.20 ~ 2017.04.30
	최영재	2017.05.30 ~ 2017.08.28
	강동호	2017.08.29 ~ 2018.04.15
	김기둥	2018.04.16 ~ 2018.10.10
	소정섭	2018.10.11 ~ 2019.05.29
	박정엽	2019.05.30 ~ 2023.06.08
	김정은	2024.02.14 ~ 2024.04.15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법인 또는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1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1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1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1)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1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1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 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관(F)	법인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용 수익증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 분	세부 내용
주요 투자대상	주식 : 60% 이상, 채권 : 40% 이하 등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되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투자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전략 - 일정한 계량지표를 기준으로 투자가능 종목군을 구성하고 이러한 투자가능 종목군에 포함된 종목 중 가치분석, 성장성 예측 등의 분석을 통해 선별된 대형주 및 중소형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기타 기업의 인수, 합병, 실적 모멘텀 등 이벤트를 활용한 종목별 대응으로 수익 추구 - 투자대상 종목군 선정 단계에서 계량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부도 위험이 높다고 예상되는 종목 사전적 제외(별도의 퀀트운용팀을 두어 채권스코어 모형, 부도 예측 모형, 재무분석 모형 등을 개발, 활용)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 이하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	10% 이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내용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 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집합투자증권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증권 대여주1)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제한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 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 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 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지분증권 투자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6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본문, 제3호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조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 지수 × 95%) + (CD 91일물 × 5%)

KOSPI지수는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수익률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해당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여 사용합니다.

주)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을 실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전략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되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투자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일정한 계량지표를 기준으로 투자가능 종목군을 구성하고 이러한 투자가능 종목군에 포함된 종목 중 가치분석, 성장성 예측 등의 분석을 통해 선별된 대형주 및 중소형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기타 기업의 인수, 합병, 실적 모멘텀 등 이벤트를 활용한 종목별 대응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코스닥시장의 성과를 반영하지 않지만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비중은 시장상황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현금성자산 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환매대금 확보 등을 위하여 채권과 어음, 자산유동화 증권 등에의 투자와 유가증권 대여, 30일 미만의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 등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기타>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의 조절을 통한 수익의 추구를 최소화 할 예정이나 운용자의 판단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주식투자비중 조절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 운용역 개인의 독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 합니다.
- 리스크관리본부에서 각종 법령 및 규정, 지침, 내규가 지켜지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으로 펀드의 실적평가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합니다.
- 투자대상종목 군 선정 단계에서 계량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부도 위험이 높다고 예상되는 종목은 사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당사는 이를 위하여 별도의 퀀트운용팀을 두어 채권스코어 모형, 부도예측 모형, 재무분석 모형 등을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 지수 × 95%) + (CD 91일물 × 5%)
KOSPI지수는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수익률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해당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여 사용합니다.
주)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을 실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내용
원금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항상 급격히 변화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의 시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파생상품, 주식관련채권(전환사채 등) 등과 같이 그 가격이 주가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주식의 시세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체계적 위험	이 투자신탁의 고유한 운용전략 및 목표의 특성과 운용자의 재량에 의해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시장 포트폴리오(비교지수의 포트폴리오)와 상이하게 구성됩니다.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은 시장의 평균적인 위험 외에 포트폴리오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 즉 비체계적인 위험을 추가로 수반하며 이는 시장평균(비교지수) 성과에 미달하는 성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편입비중 조절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편입비중 조절전략의 의도와 다르게 주식가격이 변화할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채무증권과 같은 주식 외의 자산에 대해서 금리민감도를 조절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바, 의도와 다르게 금리가 변화할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표준화된 장내시장거래와 달리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없고, 규제와 감독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시세가 형성되는 않는 등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예금, 단기대출 등의 자산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관련 자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거래가 시장에서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손실을 유발합니다.
금리변동위험	금리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재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매비용 과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악화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 입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거래는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지니며 레버리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내용
중소형주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에 비해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주식투자가 수반하는 위험 외에 중소형주 투자위험을 추가로 수반합니다.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 변동성 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의 위험수준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내용
환매가격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 보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가격의 하락율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매연기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의 연기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보유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심각한 환금성의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수익자의 지위, 투자신탁재산의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이나 예금과 같은 시가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이나 장부가 등을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수익자간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 하에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의무에 다해 의사를 결정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등의 자산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일시에 집중적인 대량의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운용전략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가 방해를 받거나 자산의 처분 자체가 처분가격 및 미처분 자산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용 교란 위험	투자신탁에 대한 설정 및 환매의 청구는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거래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를 방해하거나 자산의 시장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유리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리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같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 95.05%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 전 위험등급	변경 후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1등급	3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5단계 → 6단계)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연환산) : 10% 초과 15% 이하
2020.11.13	3등급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연환산) : 15% 초과 25% 이하
2026.11.06	2등급	1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 50% 초과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등 위험자산에의 투자가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이 유발하는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전체 보유자산 대비 합리적 비중을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를 절대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리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_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주1) 설정 3년 경과 투자신탁은 출시 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합니다.

주2)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법인 또는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1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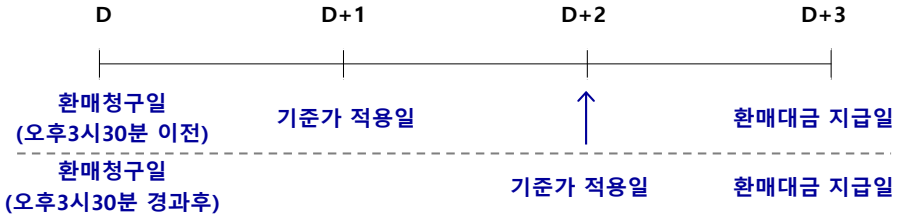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라)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 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탁계약서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다.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차회의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준으로 전환처리합니다.

⑤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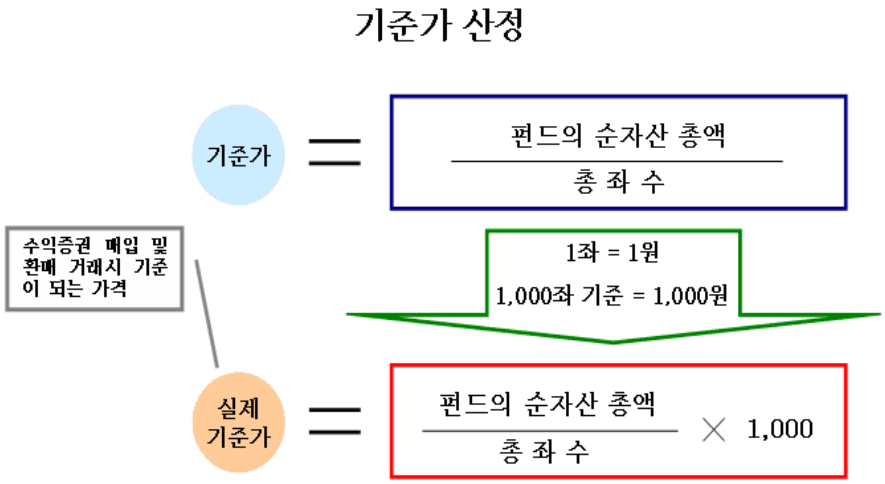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경우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투자신탁과 기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비용 등 모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기타비용등이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함)
비상장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의 상장채무증권 평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주) 상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다음의 사항을 논의 및 결정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1e)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신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주2)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3)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합성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546	0.850	0.030	0.015	1.441	0.000	1.441	1.320	1.440	0.392
수수료선취-온라인(A-e)	0.546	0.353	0.030	0.015	0.944	0.000	0.944	0.980	0.943	0.3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0.546	1.400	0.030	0.015	1.991	0.000	1.991	1.590	1.990	0.3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0.546	1.200	0.030	0.015	1.791	0.000	1.791	-	1.790	0.3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0.546	0.950	0.030	0.015	1.541	0.000	1.541	-	1.540	0.3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546	0.850	0.030	0.015	1.441	0.000	1.441	-	1.440	0.3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546	0.544	0.030	0.015	1.135	0.000	1.135	1.030	1.134	0.4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0.546	0.150	0.030	0.015	0.741	0.000	0.741	-	0.740	0.39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546	0.350	0.030	0.015	0.941	0.000	0.941	-	0.940	0.3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0.546	0.400	0.030	0.015	0.991	0.000	0.991	-	0.990	0.3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1e)	0.546	0.250	0.030	0.015	0.841	0.000	0.841	-	0.840	0.392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예시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등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직전 회계기간 발생 비용 : 330,844원]

- 증권거래비용 예시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매매수수료, 대차·REPO 중개수수료 등

주3) 금융비용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실제 발생시 기재할 예정입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Class A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7)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종류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45	399	560	907	1,93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45	399	560	907	1,9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04	397	571	921	1,963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04	397	571	921	1,962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46	247	353	582	1,26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46	247	353	581	1,25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6	238	367	643	1,463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6	238	366	642	1,46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lass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Class C2, Class C3, Class C4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Class A-e, C1~C4를 제외하고 설정되지 않은 종류 수익증권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2) **Class A와 Class C1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Class A-e와 Class 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Class A, Class A-e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 납입금액의 0.5%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Class S의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고, 환매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달라서 상기 수수료 및 보수·비용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lass S 수익증권의 투자자가 실제 환매시점에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상기 예시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 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7년 1월 19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 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기준가격은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하여 산정되는 가격으로서 수익증권의 매입 및 환매 시 적용됩니다.

한편, 과표기준가격은 투자원금에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환매 또는

이익분배 시 수익자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과표기준가격 산정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준가격 기준으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에게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표기준가격은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회계감사법인
제16기(2025.10.29 ~ 2026.10.28)	회계감사면제	-
제15기(2024.10.29 ~ 2025.10.28)	회계감사면제	-
제14기(2023.10.29 ~ 2024.10.28)	회계감사면제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항 목	제16기	제15기	제14기
	2026.10.28	2025.10.28	2024.10.28
운용자산	78,159,274	58,523,702	87,963,291
유가증권	77,384,068	57,308,616	87,499,13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775,206	1,215,086	464,159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89,101	171,012	293,434
자산총계	78,448,375	58,694,714	88,256,72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08,620	202,726	352,665
부채총계	308,620	202,726	352,665
원본	35,299,692	38,514,650	85,302,084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42,840,063	19,977,338	2,601,976
자본총계	78,139,755	58,491,988	87,904,060
운용수익	28,237,453	23,324,044	13,326,100
이자수익	20,171	21,459	15,105
배당수익	693,237	1,511,398	1,555,098
매매평가차손익	27,524,045	21,791,187	11,755,897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192,168	1,006,146	1,243,670

관련회사보수	1,192,168	1,006,146	1,243,67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27,045,285	22,317,898	12,082,430
매매회전율	0	0	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6기 0원, 15기 0원, 14기 0원 발생)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6기 0원, 15기 0원, 14기 0원 발생)

주4)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300,959,754	330,836	0.11	290,900,438	315,809	0.11
기타 (레포,대차,콜 등)	19,054,495	8	0.00	88,448,821	56	0.00
합 계	320,014,249	330,844	0.10	379,349,259	315,865	0.08

주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주,원,%)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796	97,006,528	1,594	202,313,914	80,719,524	250.64	32.65

주1)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해당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최근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항 목	제16기	제15기	제14기
	2026.10.28	2025.10.28	2024.10.28
운용자산	78,159,274	58,523,702	87,963,291

현금및예치금	775,206	1,215,086	464,159
현금및현금성자산	775,206	1,215,086	464,159
유가증권	77,384,068	57,308,616	87,499,132
수익증권	77,384,068	57,308,616	87,499,132
기타자산	289,101	171,012	293,434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87,597	168,278	292,414
미수이자	1,504	2,734	1,020
자 산 총 계	78,448,375	58,694,714	88,256,725
기타부채	308,620	202,726	352,665
미지급운용수수료	118,431	70,307	123,289
미지급판매수수료	180,581	105,719	188,278
미지급수탁수수료	6,431	3,788	6,677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3,177	1,864	3,281
미지급이익분배금	0	21,048	31,140
부 채 총 계	308,620	202,726	352,665
원 본	35,299,692	38,514,650	85,302,084
이익잉여금	42,840,063	19,977,338	2,601,976
자 본 총 계	78,139,755	58,491,988	87,904,060
부채 및 자본 총계	78,448,375	58,694,714	88,256,725
총좌수	29,706,625	32,787,848	71,587,250
기준가격	2,617.48	1,768.77	1,211.11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항 목	제16기	제15기	제14기
	2025.10.29 ~ 2026.10.28	2024.10.29 ~ 2025.10.28	2023.10.29 ~ 2024.10.28
운용수익(운용손실)	28,237,453	23,324,044	13,326,100
투자수익	713,408	1,532,857	1,570,203
이자수익	20,171	21,459	15,105
배당금수익	693,237	1,511,398	1,555,098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7,524,756	21,956,917	11,759,007
지분증권매매차익	2,292,416	3,813,197	175,073
지분증권평가차익	25,232,340	18,143,720	11,583,934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711	165,730	3,110
지분증권매매차손	711	165,730	3,110
운용비용	1,192,168	1,006,146	1,243,670
운용수수료	459,257	387,249	476,874

판매수수료	695,733	587,743	728,294
수탁수수료	24,893	20,901	25,829
사무수탁수수료	12,285	10,253	12,673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27,045,285	22,317,898	12,082,430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882.12	392.37	167.7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종류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투자신탁(운용)	2023/10/29~2024/10/28	71	75	0	0	1	1	72	88
	2024/10/29~2025/10/28	72	87	0	0	40	53	33	59
	2025/10/29~2026/10/28	33	58	0	0	3	9	30	7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3/10/29~2024/10/28	82	72	0	0	0	0	82	83
	2024/10/29~2025/10/28	82	83	0	0	46	51	36	53
	2025/10/29~2026/10/28	36	53	0	0	2	3	34	7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3/10/29~2024/10/28	3	4	0	0	0	0	3	5
	2024/10/29~2025/10/28	3	5	0	0	1	1	3	6
	2025/10/29~2026/10/28	3	6	0	0	1	4	2	5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으며,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10/29~2026/10/28	2024/10/29~2026/10/28	2023/10/29~2026/10/28	2021/10/29~2026/10/28	
투자신탁(운용)	2010-10-29	49.30	48.55	37.36	14.87	7.79
비교지수	2010-10-29	48.20	49.40	36.10	14.45	7.36
수익률 변동성	2010-10-29	44.97	34.62	29.42	24.65	19.8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1-03-08	47.11	46.47	35.42	13.23	5.11
비교지수	2011-03-08	48.20	49.40	36.10	14.45	7.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1-03-10	47.59	46.93	35.85	13.60	4.47
비교지수	2011-03-10	48.20	49.40	36.10	14.45	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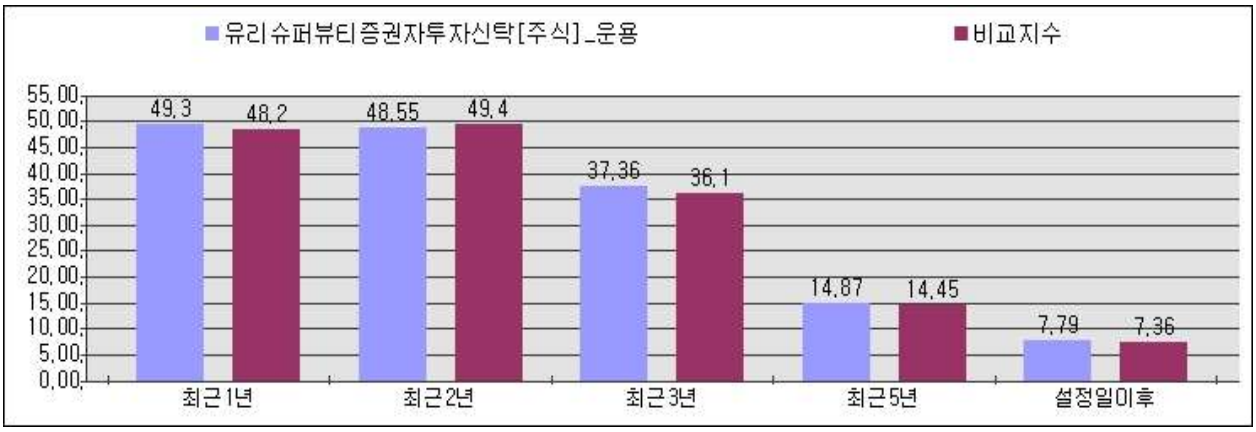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KOSPI 지수 × 95% + CD 91일 수익률 × 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주5)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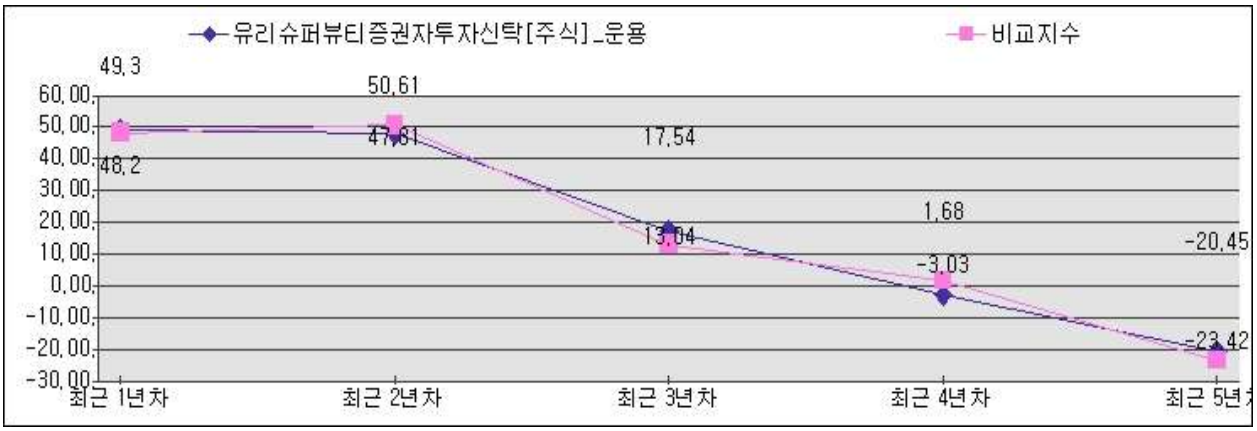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5/10/29~ 2026/10/28	2024/10/29~ 2025/10/28	2023/10/29~ 2024/10/28	2022/10/29~ 2023/10/28	2021/10/29~ 2022/10/28
투자신탁(운용)	2010-10-29	49.3	47.81	17.54	-3.03	-20.45
비교지수	2010-10-29	48.2	50.61	13.04	1.68	-23.4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1-03-08	47.11	45.83	15.87	-4.42	-21.62
비교지수	2011-03-08	48.2	50.61	13.04	1.68	-23.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1-03-10	47.59	46.27	16.24	-4.11	-21.36
비교지수	2011-03-10	48.2	50.61	13.04	1.68	-23.42

주1) 비교지수 : KOSPI 지수 × 95% + CD 91일 수익률 × 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6.10.28 현재 / 단위 : 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대한민국 (KRW)	0	0	0	77	0	0	0	0	0	1	0	78
비중	(0)	(0)	(0)	(98.64)	(0)	(0)	(0)	(0)	(0)	(0.99)	(0.37)	(100)
자산합계	0	0	0	77	0	0	0	0	0	1	0	78
비중	(0)	(0)	(0)	(98.64)	(0)	(0)	(0)	(0)	(0)	(0.99)	(0.37)	(100)

주) 자산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자산비중]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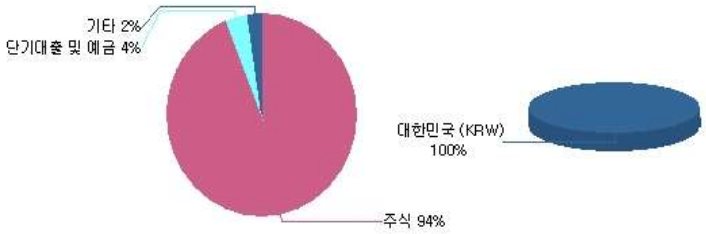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6.10.28 현재 /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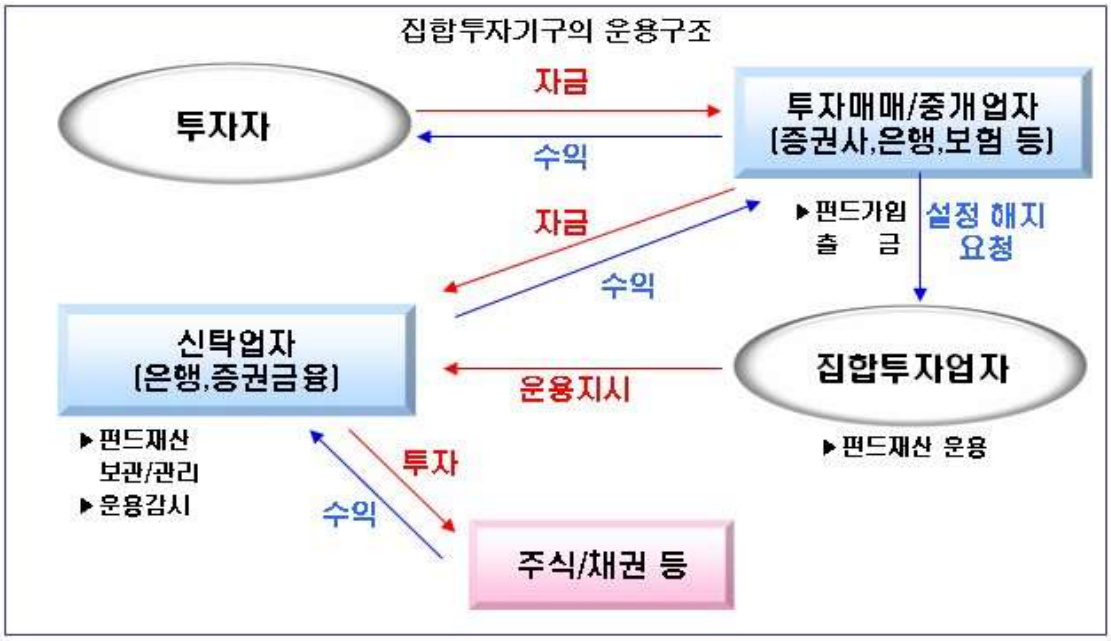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대한민국 (KRW)	11,225	0	0	0	0	0	0	0	0	425	291	11,941
비중	(94)	(0)	(0)	(0)	(0)	(0)	(0)	(0)	(0)	(3.56)	(2.44)	(100)
자산합계	11,225	0	0	0	0	0	0	0	0	425	291	11,941
비중	(94)	(0)	(0)	(0)	(0)	(0)	(0)	(0)	(0)	(3.56)	(2.44)	(100)

주) 자산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자산비중]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여의도동) ☎ 02-2168-7900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yurieasset.co.kr
회사연혁	1998.10 회사설립 1999.08 자산운용회사 등록 1999.10 뮤추얼 펀드 판매 개시 2000.03 투자자문업등록 2000.05 투자일임업등록
자본금	153억
주요주주현황	부국증권㈜ 99.9% / 우리사주조합 0.1%
이해관계인	판매회사 중 부국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나. 주요 업무

○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FY2025(28기)	FY2024(27기)	계정과목	FY2025(28기)	FY2024(27기)
유동 자산	76,938	67,595	영업 수익	25,694	23,096
비유동 자산	7,182	6,587	영업 비용	14,315	13,994
자산 총계	84,120	74,182	**영업 이익**	11,380	9,103
유동 부채	3,586	2,821	영업외 수익	41	2
비유동 부채	406	164	영업외 비용	16	27
부채 총계	3,992	2,984	**세전 순이익**	11,405	9,078
자 본 금	15,300	15,300	법인세 비용	2,474	1,933
자본 잉여금	198	198	**당기 순이익**	8,931	7,145
이익 잉여금	64,631	55,700			
자본 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	-	-			
자본 총계	80,129	71,198			

라. 운용자산규모

(2026.09.30 기준, 단위 : 억)

구분	증권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수탁고	33,881	4,877	74,582	2,873	2,073	-	3	50	-	118,33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1599-1111
인터넷홈페이지	www.hanabank.com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02-6714-4600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hanais.co.kr/

(2)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 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및 신탁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1 ☎ 02)398-39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입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외의 사유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③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 해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상기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기타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②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 포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준: 2026.10.28 /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분류	거래금액
성명(상호명)	관계			
미래에셋증권	해당없음	중개거래	주식	9
부국증권	최대주주	중개거래	주식	105

주)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선정원칙>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예 : 상장주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 요소 : 매매체결능력/중개수수료/정보제공의 정도/조사분석자료의 질/결제이행능력 - 평가 주기 : 분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함 - 평가주체(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는 개인별로 평가표를 작성. 다만, 평가주체 개인별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부서별 평가 가능 - 평가 결과는 각 본부별로 집계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고, 결과 제출 시 개인별 평가표도 함께 제출 -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는 주요 펀드운용/투자관련 정보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의 역량(시장정보 등 자료제공, 세미나 지원, 기업방문 등) 및 업무담당자(리서치센터, 법인영업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트레이더는 주문체결의 정확성, 체결단가의 적합성, 시황, 매매동향 등 정보사항의 신속한 제공, 유동성 제공,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태, 자금결제의 안정성 및 업무담당자(Sales, Sale Trader, Dealer)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 고] 펀드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	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